

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KGFA

- 2016. 02. 24 제정 (制定)
- 2018. 01. 30 개정 (改正)
- 2018. 10. 24 개정 (改正)
- 2019. 06. 03 개정 (改正)

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기도(이하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제 규정과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및 대회 정의)

① 경기도 **등록팀이 참가하는** 모든 대회와 대한축구협회가 주최/주관 하지 않는 국제대회는 경기도축구협회(이하협회) 승인 대회에 한하여 개최 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정관에 명시된 회원단체(시.군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에 적용한다.
2. **등록팀이** 참가하는 각종 대회에 적용한다.
3. 비회원 단체가 **등록팀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대회에 적용한다.
4.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국제대회에 적용한다.

5. 협회가 승인하는 도내개최 대회의 신청, 승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단, 도내에서 개최되는 대회 중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는 별도의 규정(대한축구협회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본 규정에 적용되는 대회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문축구대회**

(**전문축구대회**)라 함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팀이 출전하며 학생 선수(초, 중, 고, 대) 및 아마추어 및 실업선수(내셔널, K3)들의 대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화 한다.

1. (전국대회)라 함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가 승인한 16개 이상의 등록 팀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말한다. 단, 여자부 대회의 참가팀 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 (지방대회)라 함은 전국대회를 제외한 협회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대회(각종대회, 페스티벌, 스토브리그 등)를 말한다.
3. (연습경기)라 함은 수익사업의 목적이 없고, 각종 시상을 하지 않는 단순한 훈련을 위한 경기를 말한다.

4. 연습경기의 경우 어떠한 대회명칭(대회, 페스티벌, 스토브리그 등)도 사용할 수 없다.

5. 전국대회를 제외한 모든 승인대회는 (전국대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나. 동호인축구대회

(동호인축구대회)라 함은 동호인축구팀이 출전하며 전문 선수가 아닌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을 하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를 말한다.

다. 국제대회

(국제대회)라 함은 3개팀 이상의 다른 나라 협회 소속 국가대표팀 또는 클럽팀이 참가하는 대회를 말한다.

제2장 대회 참가 범위

제3조 (대회 참가 범위)

① 협회 모든 등록팀은 승인대회만 참가 할 수 있다.

② 협회 등록 팀은 협회가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회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승인하지 않은 대회 참가로 인해 팀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협회가 책임을지지 않는다.

④ 대회 참가의 제한

1. 전문축구 관련 제한

1-1. 전국대회

가. 초등, 중등, 고등 남자부의 경우(연 2회(동계1회, 하계1회))참가제한한다. 단, 초중고 축구리그(왕중왕전 포함)는 제외한다.

나. 여자부의 경우 (연3회)로 참가 제한한다.

다. 아래의 전국단위 경기대회는 참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a. 국제경기(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 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

b. 전국 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c. 국가대표 선발대회(대회명과 경기 개최요강에 ‘국가대표 선발대회’임을 명시하고, 경기단체장이 일정한 참가자격을 부여한 대회

d. 여자부의 경우 방학 중에 참가하는 대회

1-2. 지방대회

가. 지역 내 팀이 참가하는 시.도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지방대회는 참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대한축구협회 비회원 단체(지방자치단체, 시.군협회, 기타단체(언론 등))와 시도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모든 지방대회의 경우 등록 팀은 (연2회)로 참가 제한한다.(대한축구협회 국내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 제2장 제3조 제4항에 따름)

1-3. 연습경기

연습경기는 참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동호인축구대회

가. 경기도 지역내 **전문축구팀**을 제외한 팀이 참가하는 대회로 참가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국제대회

국제대회는 대한축구협회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에 준용하여 승인 받아 개최되는 대회로 참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장 대회의 신청 및 승인

제4조 (신청 자격)

① 대회의 신청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회원 단체의 경우 제6조 3항을 준수하고, 개최지역 시도협회에 1차 승인을 받은 후 협회에 대회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국제대회의 경우 대한축구협회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조 (대회 주최, 주관 및 후원의 정의)

대회 신청의 주체는 주최, 주관, 후원으로 구분되며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최)라 함은 대회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기관(단체)을 말한다.

2.(주관)이라 함은 주최 기관(단체)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기관(단체)을 말한다.

3.(후원)이라 함은 대회에 필요한 재정, 시설, 물자,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을 말한다.

제6조 (대회 개최의 범위)

1. **전문축구 관련** 대회 개최 범위

① 협회는 대한축구협회 승인대회 및 연간 도내 대회 사업계획 승인 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시·군 협회는 협회와 연계(공동주최, 주관 / 공동 주관)하여 각 호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전국대회(저학년대회포함)를 개최할 수 있다.(협회 공동주관 또는 주최, 주관 시)

2. 경기도 지역 내 팀이 참가하는 지방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협회 공동주최, 주관시)

3. 시·군협회와 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방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비회원 단체(지방자치단체) 등록 팀을 대상으로 비회원 단체 주최로 지방대회(각종대회, 페스티벌, 스토브리그 등)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와 공동주관 단체에 한하여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지방대회는 2월, 7월, 8월에는 개최할 수 없다.

2. 동호인축구 관련 대회 개최 범위

① 동호인축구팀이 참가하는 모든 대회는 시기 및 주최 주관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생활체육축구의 모든 대회는 협회의 승인을 득한 후 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국제대회 관련 대회 개최 범위

① 대한축구협회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신청 기한)

1. 전문축구 관련 대회 개최 신청

대한축구협회 대회승인 및 운영규정 3장 대회의 신청 및 승인 제7조 (신청 기한)에 따른다.

2. 동호인축구 관련 대회 개최 신청

동호인축구 관련 대회는 시기에 상관없이 개최신청이 가능하나 대회 개막 3개월 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국제대회 관련 대회 개최 신청

국제대회는 시기에 상관없이 개최신청이 가능하나 대회 개막 3개월(90일) 전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한축구협회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조 (승인 신청 구비서류)

대회 개최 승인 신청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 신청 공문
2. 승인 신청서
3. 운영 계획서
4. 관할 시.군협회 개최 동의서
5. 대회규정
6. 영문 대회규정(국제대회만 해당)
7. 신청자 이행 각서(국제대회만 해당)
8. 기타 협회의 요구서류(국제대회만 해당)

제9조 (대회의 승인)

1. **전문축구대회** 승인 관련은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
 - ① 협회는 승인 요청서를 접수한 후, 신규 대회의 경우 대한축구협회와 협의를 거쳐 대회 개막 전년도 12월까지, 기존 대회는 대회 개막 2개월 전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신청단체)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대회 승인 후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추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동호인축구대회** 승인 관련사항은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
 - ① **동호인축구대회**는 시기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대회 개막 3개월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회 2개월 전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신청단체)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대회 승인 후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추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국제대회 승인 관련사항은 대한축구협회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대회 승인의 취소 또는 조정)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회의 취소 또는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1. 기존 대회의 운영에서 대회 승인을 취소 또는 조정해야 할 현저한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2. 축구 발전 차원에서 대회 빈도나 방법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3. (대회 운영 및 승인 규정) 및 (대한축구협회 국내대회 운영 및 승인규정) (대한축구협회 국제대회 운영 및 승인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경우 대회승인 취소 및 대회위임 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승인된 대회의 통보)

협회에서 대회를 승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지 해당 시.군협회

승인서 사본과 함께 대회개최를 통보해야 한다.

제4장 대회 승인 요건

제13조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 ① 대회의 운영을 책임질 대회 조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 ②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장, 부대회장, 대회 총괄 본부장, 감독관운영총괄 관리관, 심판운영총괄관리관, 경기장운영총괄관리관, 각 경기장운영관리관(안전, 시설, 의무) 등을 반드시 배정해야 한다.
- ③ 대회 조직위원회 내에 긴급제재를 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 (경기장)

- ① 경기장은 FIFA 경기규칙 (규칙1-경기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경기장은 협회가 인정한 천연 또는 인조잔디 경기장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협회의 승인하에 맨땅(토사) 구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비율이 전체 사용 경기장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참가8개 팀당 1면 이상의 천연 또는 인조잔디 구장을 확보해야 한다.
- ④ 경기장의 숫자가 승인 요건에 미달할 경우, 대회 주최자는 경기장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여 특별 유예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연습장(공간)을 포함한 기타 소요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 ⑥ 경기장 Filed of play 외 보조 면적은 아래와 같이 권장한다.
 1. 잔디구역은 터치라인 및 골라인으로부터 최소 1.5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안전구역은 터치라인 및 골라인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기준에 미달 할 경우, 대회 주최자는 경기장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여 특별유예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점검을 통해 안정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경기장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⑦ 초등부(U12 이하) 경기의 경우 『대한축구협회 8인제 경기 규칙』에 따른 경기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경기장 부대시설)

- ① 팀 벤치

경기 중 팀 지도자와 대기 선수들이 앉을 팀별 벤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선수 대기실

경기장마다 경기팀용 2개소의 선수대기실을 구비하여야 한다. 동일장소에서 2경기 이상 연속 경기를 하는 대회인 경우, 다음 경기 팀용 2개소를 포함, 총4개의 선수 대기실을 구비해야 한다. 시설 부족 시는 간이 천막 등 임시 시설을 설치하고, 의자등을 구비 한다.

③ 심판 대기실

경기장마다 1개소의 심판 대기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시설 부족 시는 간이 천막(가림막 설치)등 임시 시설을 설치하고, 의자등을 구비한다.

④ 샤워시설

경기장마다 2개소 이상의 샤워 시설 구비를 권장한다.

⑤ 관람석

1. 간이 관람석을 포함하여 경기장별 100석 이상 구비를 원칙으로 한다.
2. 관람객의 출입 통로는 선수의 안전을 위해 선수단 출입구와 차단 되도록 한다.
3. 혹서기 대회 시에는 관람석 그늘막 설치를 권장한다.

⑥ 진행본부석, 운영요원석 및 미디어석

1. 경기장 전체가 잘 보이는 곳에 진행 본부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심판, 대회 운영요원 및 기자, 방송 중계요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좌석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⑦ 음향 및 영상시설

1.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음향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2. 경기 결과를 표시하는 전광판 시설 구비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 미비 시는 수동식 득점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기타 편의시설

선수단 및 관중의 편의를 위해 1개 이상의 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

제16조 (숙박시설)

- ①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 응원단을 위한 숙박시설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대회 관계자와 참가팀이 동일한 숙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17조 (안전대책)

- ① 선수단, 심판, 운영요원의 안전 및 관중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실행해야 한다.

- ② 선수단의 동선은 응원단 및 일반관중과 분리해야한다.
- ③ 대회 진행 본부석은 관중의방해를 받지 않고 업무 진행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 ④ 경기장 안전을 위해 치안 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⑤ 응원단은 경기장내 지정된 구역에 위치하도록 하여 응원단간의 충돌을 방지한다. 특히 조직화된 응원조직(서포터즈)은 별도의 관중석 위치를 지정 하거나, 양쪽 골대 뒤쪽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사전에 경기장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⑦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⑧ 동계에 대회 개최시 선수단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 한다.
- ⑨ 하계에 대회 개최시 쿨링 브레이크(또는 워터타임) 타임 시행을 권장한다.

제18조 (경기 개시 시간)

- ① 일일 첫 경기는 오전 10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표자 회의시 참가팀의 동의하에 경기 개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혹서기 대회의 경우 (13시~15시(또는 16시))까지의 경기 제한을 권장한다.

제19조 (휴식)

- ① 선수의 피로 회복을 위해 경기 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단,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및 대회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휴식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② 조별 리그부터 토너먼트 시작 전, 토너먼트 시작부터 결승전 사이에는 각각1일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 ③ 동호인축구대회에 한하여 대회 개최지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대회 유치도시 선정)

대회 유치의 투명성 제고 및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각 대회 주최단체는 (대회 유치도시 선정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대회 유치비용)

- ① (대회 유치비용(유치금))이라 함은 대회 유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대회개최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지원금(비용)을 말한다.

② 대회 유치비용의 수입, 지출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각 주최(주관)단체는 각각의 대회별 계정(별도 통장)을 설치, 관리(구분 계리) 하여야 한다.

③ 대회 유치비용의 집행항목은 각 주최 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감독관비, 심판비, 출장비, 시상비, 시설이용비, 물품구입비, 자료제작비, 의료비, 용역비, 홍보비(TV중계 등), 리셉션비, 지원금, 보험료, 각종수당, 축구발전기금, 기부금, 대회운영수입비, 대회명칭사용비, 대회승인비, 기타운영비 등)

④ 주최단체와 유치단체(개최지)는 상호 수행해야 할 ‘제반업무, 권리범위, 의무사항, 유치비용(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대회 개최 협약서) 체결을 권장한다.

⑤ (대회 유치금)이라함은 경기도축구협회가 예산을 설립하여 직접 주최 또는 주관 하는 대회 유치 희망 시 본 협회에 입금하는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각 호와 같이 대회 예산 규모에 따라 유치금을 별도로 책정된다.

1. 대회 예산 1억 이하 - 2000만원 (대회 규모에 따라 협의 후 결정)

2. 대회 예산 1억 이상 2억 이하 - 3000만원

3. 대회 예산 2억 이상 3억 이하 - 4000만원

4. 대회 예산 3억 이상 - 5000만원

단, 대회 유치금은 5000만원 이상 책정될 수 없다.

제22조 (대회 승인 비용 및 축구발전기금 지원)

① (대회 승인비용(승인비))이라 함은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상급단체(대한축구협회) 대회 승인 및 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② 대회 승인비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그전(연중리그) 대회 승인비 기준

1-1. 각 부별 1개 리그대회 유치시 1개 리그당 1000만원

(예 : 초.중.고 리그 대회 유치시 3000만원)

1-2. 각 부 리그 추가 유치시 1개 리그당 500만원

1-3. 각 부별 팀 수에 따른 증가

10개팀 기준으로 그 배수에 따라 100만원씩 증가
(예, 중등부 20개 팀 리그 진행시 1100만원)

2. 단일대회(리그전 후 토너먼트) 승인비 기준

2-1 각 부별 1개 대회 유치시 1개 부당 500만원

(예: 초,중,고 대회 유치시 1500만원)

2-2 각 부 추가 유치시 1개 부당(저학년대회 포함) 100만원

(예: 초,중,고 대회 외에 클럽초등부 대회 추가시 1600만원)

2-3 각 부별 팀 수에 따른 증가

32개팀 기준으로 그 배수에 따라 100만원씩 증가

(예: 중등부 64개 팀 진행시 600만원)

2-4 32개 이하 팀 1개부 대회 진행시 약수에 따라 50%로 차감

(예: 중등부 16개 팀 단일 대회 진행시 250만원)

3. 단일대회(토너먼트대회) 승인비 기준

3-1 각 부별 1개 대회 유치시 1개 부당 300만원

(예: 초중고 토너먼트 대회 진행시 900만원)

3-2 각 부 추가(32개팀,저학년대회포함) 유치시 1개 부당 100만원

(예: 초중고 토너먼트 대회외 클럽 초중고 대회 진행시 1200만원)

3-3 각 부별 팀 수 증가에 따른 증가

32개팀 기준으로 그 배수에 따라 100만원씩 증가

(예: 중등부 64개 팀 단일 토너먼트 진행시 400만원)

32개팀 기준으로 그 배수에 사이에 있을 경우 50만원 증가

(예: 중등부 50개 팀 토너먼트 진행시 550만원)

3-4 32개 이하 팀 1개부 토너먼트 대회 진행시 약수에 따라 50%로 차

감.

(예: 중등부 16개 토너먼트 진행시 150만원)

4. 동호인축구 단일대회(리그전&토너먼트) 승인비 기준

1-1 각 부별 1개 대회 유치시 1개 부당 250만원

(예: 40대부, 50대부, 60대부 대회 유치시 750만원)

2-2 각 부별 팀 수에 따른 증가

16개팀 기준으로 그 배수에 따라 100만원씩 증가

(예: 40대부 32개 팀 진행시 350만원)

2-3 16개 이하 팀 1개부 대회 진행시 약수에 따라 50%로 차감
(예: 40대부 8개 팀 단일 대회 진행시 125만원)

5. 국제대회(각국 대표팀) 또는 성인대회(K3이상팀) 승인비 기준

4-1 경기수로 구분(경기도만 개최시)

경기도내에서 개최되는 경기수로 구분, 각 경기마다 300만원으로 한다.

4-2 경기장소로 구분(두개이상 광역시.도 분산개최시)

경기도내에의 구장에서 개최되는 구장 수로 구분하여 각 구장당 500만원으로 한다.

6.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승인비는 협회와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단, 대회 1개당 100만원 이하로 할 수 없다.

③ 대회 승인비용은 상급단체 대회 승인 후에 대회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축구발전기금 지원) 이라 함은 대회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되었을 경우 각 지역에 축구발전을 위하여 개최 지역(해당 시군협회)에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⑤ 축구발전기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회 개최 관할 지역의 축구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으로 진행되는 대회에만 해당 된다.

2. 제21조 5항 각 호, 제22조 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대회 승인비 또는 대회 유치금 기준으로 축구발전기금 지원 비율을 정한다.

2-1 대회 승인비용의 경우 제22조 2항의 각호를 기준으로 책정된 승인비에서50% 이하의 금액을 해당 대회 개최 시.군 축구협회에 지원한다.

2-2 대회 유치금의 경우 제21조 5항의 각 호를 기준으로 책정된 대회 유치금에서의 25% 이하의 금액을 해당 대회 개최 시.군 축구협회에 지원한다.

⑥ 축구발전기금 지원제외

1. 비회원 단체 주최 또는 주관대회

2. 시·군 축구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에서 제외된 대회
3. 관리단체의 주최 또는 주관 대회
4. 대회 준비 및 진행 중 취소된 대회

⑦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축구발전기금 지원은 협회와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제5장 대회의 준비와 운영

제23조 (대회 조직위원의 역할)

대회 조직위원회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회장 : 대회의 대표자로서, 대회의 전반적인 준비와 운영을 책임진다.
2. 부대회장 : 대회장을 보좌해 대회 운영을 돕는다.
3. 징계위원회 : 대회 중 긴급 제재 조치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4. **대회총괄본부장** : 대회와 관련한 각 분야의 업무를 총괄 집행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아래와 같이 분야별 **관리관을 반드시** 둔다.
 - 가. **감독관운영총괄관리관** : 감독관 배정 및 관리 총괄
 - 나. **심판운영총괄관리관** : 심판 배정 및 관리 총괄
 - 다. **경기장총괄운영관리관** : 각 경기장 운영관리관 배정 및 관리 총괄
 - 라. **각 경기장운영관리관** : 각 경기장의 안전, 시설, 의무, 홍보 등 대회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운영 및 관리
5. 경기감독관
 - 가. 대회의 주최자와 대회 운영 계획을 협의한다.
 - 나. 경기장 안전 상태를 점검하며, 미비한 사항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최자와 협의 한다.
 - 다. 경기를 관찰하고 감독관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한다.
 - 라. 각종 긴급한 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 또는 주최자 및 협회에 보고하고 조치한다.
 - 마. 필요시 양 팀의 임원, 경기진행요원에게 특정 사안에 대해 조언 할 수 있다.
 - 바. 대회 감독관 배정, 파견의 권리는 협회에 있다.
 - 사. 경기위원회 규정 또는 지침사항에 근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제24조 (대회의 구분)

대회는 참가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초등부 : 초등학교팀, U12 클럽팀
2. 중등부 : 중학교팀, U15 클럽팀
3. 고등부 : 고등학교팀, U18 클럽팀
4. 대학부 : 대학교팀, 대학생 클럽팀
5. 클럽부대회
 - 가. 프로 : 한국프로축구연맹 소속 클럽팀 참가
 - 나. 실업 : 한국실업축구 연맹 및 한국여자축구 연맹소속 클럽팀 참가
 - 다. 성인클럽 : 가항과 나항을 제외한 만19세 이상의 클럽팀 참가
 - 라. 유, 청소년클럽 : 만18세 이하 클럽팀 참가
6. 혼합대회 : 학원 및 클럽부 혼합대회
7. 생활체육대회 : 각 부별(연령) 생활체육 클럽팀이 참가하는 대회
8. 국제대회 : 3개이상의 다른나라 협회 소속 구가대표팀 또는 클럽팀이 참가하는 대회

제25조 (대회의 준비)

대회주체(주최,주관,후원자)는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대회 개최 및 참가 요청 공문 발송
 - 가. 대상 : 해당 시도협회 및 참가 대상팀
 - 나. 시기 : 대회 개막 30일 - 45일 전
 - 다. 내용 : 대회 일정 및 장소, 대회규정, 참가 신청 마감일, 대표자 회의 일시
2. 대표자 회의 개최
 - 가. 참가대상 : 주최, 주관자 및 참가팀의 대표자 또는 지도자 1인
 - 나. 시기 : 대회규정에 명시된 일정
 - 다. 내용 : 대회규정 설명, 대진 추첨, 기타 공지사항 안내
3. 심판, 운영요원, 경기장, 부대시설, 물자, 안전대책 등의 확보
4. 대회 현수막, 팸플릿, 상장, 트로피 등의 제작

제26조 (대회방식)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대회 방식 중 어느 하나를 택하고, 채택된 방식은 협회와 사전 협의 후 대회규정에 표기한다.

1. 토너먼트 방식

2. 예선 리그 후 토너먼트 방식
3. 리그 방식
4. 위 사항에 없는 기타 방식의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

제27조 (대회운영)

주최자는 대회의 대표성을 가지며, 아래 각호와 같이 대회운영을 관장한다.

1. 협회의 대회승인 후 대회규정 등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협회의 추가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하여야 한다.
2. 주최자는 경기 하루 전 경기감독관, 심판 평가관 및 대회 관계자 회의를 통해 대회운영계획에 대해 협의한다.
3. 주최자는 (리스펙트 캠페인(RESPLECT CAMPAIGN)에 적극 동참 하여 상호 존중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회운영을 하여야 한다.
4. 대회 개막전일 심판 사전 교육을 위해 주최 측은 필요한 교육 시설을 제공한다.

제28조 (상업적 권리)

- ①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방송중계권판매, 광고판매, 후원사 선정, 입장료 징수 등 모든 상업적 권리는 주최자에게 있다.
-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주최, 주관, 후원자는 상업적 권리문제에 대해 상호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③ 유.청소년 연령의 팀이 참가하는 대회의 경우,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에 유해한 상품 또는 그 제조회사를 대회 명칭으로 채택해서는 안 되며, 경기장 내에서 해당 상품의 광고를 해서도 안된다.

제29조 (경비의 부담)

- ① 주최자는 대회 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 ② 주최자는 주관, 후원자와 함께 경비의 부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30조 (참가비의 징수 및 보조)

주최자는 필요할 경우 참가팀으로부터 대회 참가비를 징수 하거나 참가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 (보험가입)

주최자는 불의의 사고발생에 대비해 참가팀의 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가입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험 가입여부를 대회 참가요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2조 (참가팀을 위한 지원)

주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 제공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1. 참가팀을 위한 연습장(공간) 확보
2. 참가팀의 숙식, 이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3. 대회 조직위원회 및 다른 참가팀들의 연락처 제공
4. 참가팀에 대회 사용구 지원

제33조 (심판운영)

대회에 참가하는 심판은 각 호와 같이 운영된다.

1. 모든 대회의 심판 배정 및 파견 권한은 협회에 있으며, 회원단체 또는 기타단체(또는 기관)에서 관여할 수 없다.
2. 대회는 대한축구협회 승인을 득한 후, 협회에서 심판을 배정, 파견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단, 파견 심판의 심판비와 출장비는 협회 기준과 동일해야 한다.
3. 심판 임무는 심판위원회 규정 및 지침사항에 근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4. 대회 심판평가관 주재 하에 개막전 대회 장소에서 사전 교육을 갖고 심판 활동에 대해 논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최 측은 필요한 교육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 (시설 점검)

- ① 주최자는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 ② 협회 담당자(또는 주최자) 및 경기 감독관의 경기장 시설, 안전상태 점검 시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안 발생 시에는 협의를 통해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35조 (대회 사용구)

대회 사용구는 반드시 당해 연도 협회의 승인을 받은 공인구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제36조 (대회홍보 및 경기기록 관리)

- ① 주최자는 대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한다.

- ② 주최자는 경기 일정과 결과를 신속하게 언론사 및 각종 매체에 홍보한다.
- ③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경기기록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경기 종료후 협회 홈페이지에 신속히 결과를 입력하여야 하고, 대회종료 후 경기 기록지 원본을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 한다.

제37조 (개회식 및 폐회식)

필요시 개회식과 폐회식 개최에 대한 사항을 대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경기 진행 순서)

경기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하되, 사정에 따라 일부 순서는 생략할 수 있다.

1. 경기개시 70분전 : 운동장 시설점검
2. 경기개시 65분전 : 양 팀에 출전선수 명단 및 교체선수 용지 배포
3. 경기개시 60분전 : 양 팀 출전 선수명단 접수 및 확인 대조
4. 경기개시 45분전 : 양 팀 워밍업
5. 경기개시 10분전 : 심판진 및 양 팀 출전 선수소개 (장내방송)
6. 경기개시 7분전 : 양 팀 출전 선수 장비검사
7. 경기개시 5분전 : 양 팀 선수, 심판진, 기수단 입장
8. 경기개시 4분전 : 국민의례, 양 팀 사진 촬영 및 진영 결정
9. 전반전 개시
10. 하프타임 휴식시간 : 15분 이내, 경우에 따라 (10분 전.후)로 하되 15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대회운영본부(주최 측)에서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11. 후반전 개시
12. 경기 종료 직후 : 양 팀 악수례 (양 팀 주장의 인도하에 상대팀 선수 및 심판과 악수하고 관중들에게 손 흔들어 답례)

제39조 (경기 진행석 요원의 임무와 구성)

① 경기 진행석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출전 선수 명단 용지 배포, 회수 및 확인 대조
2. 경기 직전 장내방송을 통해 경기팀, 출전선수, 심판소개
3. 경기 기록부 작성
4. 장내 방송을 통해 득점자 및 교체 선수 소개
5. 기타 경기 또는 행사에 관련된 안내 방송

② 경기 진행석 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진행 책임자
2. 장내 아나운서
3. 경기 기록자

제40조 (사전경기)

본 경기에 앞서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사전 경기(오픈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본 경기개시 90분전에 종료 되어야 하며, 우천 등의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 (의료지원)

① 환자 발생에 대비한 구급차량 및 국가공인자격증이 있는 응급처치 가능자를 반드시 경기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구급차량의 경우, 응급구조 물품 및 산소 호흡기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 자동제세동기(AED)를 갖추고 있는 차량 배치를 권장한다.

2. 구급차량은 각 경기장별 1대 이상 배치하고, 예비용 일반 차량을 추가 배치한다. 예비용 일반 차량의 경우 긴급차량 표시를 별도로 한다.

3. 응급처치 가능자는 경기장별 1인이상 배치한다.

4. 경기장에 배치된 구급차량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경기장을 떠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구급차량을 신속히 배치하기 위해 위 '2항' 구급차량 외에 예비용 구급차량(1대) 및 응급처치 가능자(1명)를 추가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② 의료 지원자는 경기장에 설치된 의료 지원석에 앉고, 구급차는 경기장 인근에 배치한다.

③ 들것조 활동을 위해 별도의 전담인원(4명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④ 경기 중 부상을 당한 선수의 치료비는 일정액 범위 내에서 주최자가 부담하며, 대회규정에 명기 한다.

⑤ 위4항의 경기 중이라 함은 킥오프부터 경기 종료까지로 한다.

제42조 (유스프로그램 시행)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유스프로그램(Youth Program)을 시행할 수 있다.

1. 입장식 기수단 및 선수단 에스코트 운영

2. 공도우미(Ball Klds) 운영

제43조 (시상)

주최자는 대회 종료 직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상을 실시 한다.

1. 단체상 : 우승, 준우승, 3위, 페어플레이상, 응원상 등
2.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우수상, 득점상, 수비상, 골키퍼상, 지도자상, 심판상 등
3. 기타 시상 : 각 대회 실정에 따라 시상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제44조 (대회 보고서 및 평가서)

협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회보고서를 취합하고 평가서를 작성한다.

1. 감독관 및 심판보고서

가. 경기 감독관 보고서, 심판보고서는 대회종료 후 72시간 이내 해당 보고서 작성 책임자가 서면으로 협회에 제출

나. 사고 발생 시 해당 경기의 경기감독관은 경기 종료 후 즉시 팩스 송신 등의 방법으로 긴급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대회 종료후 가항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2. 대회 결과보고서

주최 또는 주관자가 대회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 규정의 채택과 효력

- (1) 본규정은 2016년 2월 18일 경기도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규정은 대한축구협회 국내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과 대한축구협회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 시행한다.